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69

발의연월일: 2021. 7. 27.

발 의 자: 김성환·강득구·김성주

김승원 · 김영배 · 김원이

김정호 · 문진석 · 민형배

박완주 • 신영대 • 신정훈

양경숙 · 양이원영 · 양정숙

어기구 • 우워식 • 위성곤

윤영덕 • 윤준병 • 이소영

이용빈 · 이용선 · 이원택

이학영 • 이해식 • 천준호

허 영·홍성국·김남국

의원(30인)

제안이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 장거리 송전 방식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및 집 단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 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하여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 전망 건설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리스크 관리 취약 등 한계에 봉착하였으므로 분산에 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여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 가.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다.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등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허가 및 등록요건, 공급조건을 명시함(안 제8조, 제9조 및 제13조).
- 라.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하여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과장금을 부과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마. 분산형전원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전망 접속지연, 출력제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전망관리방침을 마련하고, 배전사업자에게 망관리 의무를 부여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바. 과잉발전으로 인한 배전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출력제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 사. 배전망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배전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배전감독원을 설립함(안 제22조).
- 아.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 조).
- 자.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 차.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각종 규제 요소를 특례로 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함(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 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 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및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53조부터 제64조까지).

참고사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1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 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 2. "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사업
 - 다.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사업 중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 라.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 마.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 바. 수소발전사업: 수소가스를 원료로 하는 발전사업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발전규모 이하의 사업
- 사. 저장전기판매사업: 생산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판매하는 사업
- 아. 소규모전기공급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사업
- 차. 수요관리사업: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수요반응자원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력생산 및 수급 조절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 3. "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나. 제9조에 따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외의 분산에너지사 업의 등록을 한 자
 - 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로 의제를 받은 자
- 4. "배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를 말한다.
- 5. "송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를 말한다.
- 6.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 7. "배전망"란 배전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배전선로, 변압기, 개폐 장치 및 기타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 8. "송전망"란 송전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송전설로, 변압기, 개폐 장치 및 기타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 9.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 및 공동주택단지 등의 시행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에 발생하는 전기의 원활한 흐름·품질유지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에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 10.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제4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분산에너지의 생산·저장·거래·사용에 관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분산에너지를 주된 에너지로 사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전기 공급구역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구역전기 공급구역 전체를 포함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화 촉진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이용 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제29조 및 제46조와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

로 하는 5년 단위의 분산에너지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3. 자가소비에 대한 유인체계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4. 부문 간 결합 등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보급량에 관한 사항
- 5. 마을 단위의 전력망 운영·관리 등 분산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 6.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 7.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 촉진에 관한 사항
- 8.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 9. 복합 에너지 충전시설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 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실 태조사를 할 수 있다.
 -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전망
 -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기술현황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 정책과 제도 정비에 필요한 현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개선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법령의 개선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이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장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등

- 제8조(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의 허가) ①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③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 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 2.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 3.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시설이 다른 분산에 너지 통합발전소사업과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 4. 그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외의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①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것으로 본다.
 - 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 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 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
 - 3.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 ②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 1. 신청인이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인력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변경등록의 요건,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2. 법인이 아닌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3. 법인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4. 법인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 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허가 등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 2. 제8조제3항 또는 제9조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이나 등록요건에 미 달하게 된 경우
 - 3.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②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분산에너지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 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수 있다.
-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의 죄를 제175조(제172조제1항의 죄를 제175조(제172조제1항의 죄를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의 죄를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의 죄를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의 죄를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의 죄를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의 죄를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의 제175조제1항의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의 제175조제1항의 제175조제1항의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의 제175조제1항의 제175조제1항의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의 제175조제1항의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의 제175조제1항의 제175조(제175조의2제1항의 제175조제1항의 제175조제1항의 제175조(제175조의2제1항의 제175조제1항의 제175조(제175조의2제1항의 제175조제1항의 제175조(제175조의2제1항의 제175조(제175조의2제1항의 제175조) 제175조(제175조의2제1항의 제175조의2제1항의 제175조(제175조의2제1항의 제175조(제175조의2제1항의 제175조) 제175조(제175조의 제175조의 제1

- 3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만 해당한다) 중 전기에 관한 죄를 짓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제 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 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 제13조(분산에너지사업자의 공급조건 등) ①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게 전기 또는 열을 공급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에 따라 전기 또는 열을 공급하여야 한다.
 - ③ 분산에너지사업자 또는 전기나 열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 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1. 사고로 분산에너지의 공급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나 그 밖의 조치를 신속히 하지아니할 경우
 - 2. 그 밖에 분산에너지 공급업무의 방법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경우

제4장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등

제15조(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의무설치자"라 한다)에게 에너지사용량 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분산에너지 설비 설 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1.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 의 소유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자
 - 나.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자
 -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 업자
 -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자
 - 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자
 - 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자
 - 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운영자
 - 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 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관리자
 - 자. 그 밖에 분산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사용 이 필요한 지역, 지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의 관 리자
- ②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량(이하 "의무설치량"이라 한

- 다)은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무설치자에게 의무설치량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 의무설치자의 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현황 및 에너지 사용량
- 3. 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적합성 정도
- 4. 타 법률에서 분산에너지 설치와 관련한 의무부과 여부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의무설치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량의 산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무설치량을 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이의신청) 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무설치량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무설치자는 의무설치량이 정하여진 날 또는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분산에너지 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효율 향상 등을 위하여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한 의무설치자에 대하여 분산에너지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과징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과징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장 배전망 관리

- 제18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관리의무 등) ①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에 연계된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배전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전망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배전망관리방침을 공개하고, 배전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해당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산에너지 보다에게 고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리적인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배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 1. 배전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2. 일시적 과부하,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 등에 따른 배전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분산에너지사업자 등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3.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4. 전력거래소 또는 송전사업자가 송전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또는 송전망 전기설비의 공사·유지보수 및 운영에 따른 송전망 혼잡 해소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세부적 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 ①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에 연계된 사업지역 안에서 태양광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서 발전된 전 력에 대한 출력 예측, 감시, 평가 및 제어 등을 통해 전력계통을 안 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형전원의 출력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에 필요한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형전원에 관한 정보를 배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배전사업자가 제20조에 따라 출력제어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이에따라야 한다.
 -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형전원의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분산에너지사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분산형전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제어 및 통신 기능을 갖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⑤ 배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전력거 대소와 상호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⑦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상호 공유 및 협조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배전사업자의 출력제어조치) ①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의 안정적 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형전원에 대 한 출력을 제어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배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출력제어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배전망 증설·운영계획의 제출 등) ① 배전사업자는 배전사업지역 안에 설치 또는 운영되는 분산형전원 사업의 종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분산형전원의 실태를 조사하고해당 지역의 분산형전원 수용에 필요한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배전계통과 연결되는 분산형전원의 특성과 분산형전원 활성화 상황을 고려하여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배전망 증설 및 운영계획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

- 하여 그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배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2항에 따른 배전망 증설 및 운영계획의 이행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분산형전원의 실태조사,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6장 한국배전감독원의 설립 등

- 제22조(한국배전감독원의 설립) ① 배전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배전감독원(이하 "배전감독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배전감독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배전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분산형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배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감독
 - 2. 배전망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감독

- 3. 배전망의 공정한 운영기준 관련 정책수립
- 4. 배전사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 5. 배전망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조성사업
-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배전망 운영 관련 사업
- ④ 배전감독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부설기 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배전망의 적정한 검사·감독업무를 위하 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배전감독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야한다.
- ⑥ 배전감독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배전감독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배전감독원이 아닌 자는 배전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4조(규칙의 제정) ① 배전감독원의 장은 배전감독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배전감독원의 장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

- 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5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배전감독원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배전시설 현황 또는 운영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있다.
 - ② 배전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하는 배전감독원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6조(시정명령) 배전감독원의 장은 배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 2. 이 법에 따라 배전감독원의 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 3. 이 법에 따른 배전감독원의 감독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27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배전사업 및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28조(배전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배전사업자와 배전망이용자 그리고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배전망운영 관련 분쟁 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배전감독원에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배전감독원의 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배전감독원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배전감독원의 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 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경제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 배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배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7. 그 밖에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 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배전감독원의 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이상 7명이하의 조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 제29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①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 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 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 의한 사업
-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 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4. 그 밖에 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상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전력계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등)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

- 며, 전력계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력계통영향평가서 를 검토하는 경우 제32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 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통영향사업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2. 사업계획등의 조정 · 보완
-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전력계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
-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는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 제31조(이의신청)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2조(전력계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계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전력계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30 조제5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 영한 사업계획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34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0조·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 제35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이행)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

행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 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계통영향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계통 영향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6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적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확인 후 즉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조사·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업장 출입 시에 그 신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 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7조(이행조치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계통영향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제38조(사후관리)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 록 자체발전시설 등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자체발전시설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8 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 를 결정하고, 그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제39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 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통영향사업자가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 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 제4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42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① 민간기업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

- 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민간기업등이 제안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는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2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분 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육성방안
 -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 수요 및 공급 계획
 - 6. 그 밖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3 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0 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에너 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 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도지 사와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 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전기의 원활한 공급과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한 분산에너지의 활 성화가 특별하게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분산 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시·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① 제43조에 따라 분산에 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민간기업등에 대해서는 분산에너 지특화지역계획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이하 "규제특례등"이라 한다)한다.

-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할 시·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변경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규제특례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 ④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등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 적용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제특례등의 변경이 매우 곤란하거나 변경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등을 유지시킬 수있다.
- 제4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시·도지사는 분산에너 지특화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규제특례등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해제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성과가 부진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지정해제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할 시· 도지사와 민간기업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따라 해당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등은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규제특례등의 적용중지 또는 해당 규제 관련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 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여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49조(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수시로 점검

- 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전력계통 안정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대한 위험 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제특례등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분산에 너지 특화지역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 지특화지역 안에서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사고 등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전기 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제2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제4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51조(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 ①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기사용자를 제외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절차, 계량 및 정산 등에 관하여 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52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특례) ①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사항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② 공급규정의 전기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 다.
 - ③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그 요지를 문서로 알리고, 분산에너지사업자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공급규정에 따라 분산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⑤ 분산에너지 사용자는 공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9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

제53조(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지원) ① 정부는 분산에너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편익보상을 산정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54조(보조·융자) ① 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1.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전성·효율성·친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 2. 분산에너지사업의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 3.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5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금
- 제56조(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 급촉진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7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 제5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1.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반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재교육을 통한 인력의 양성
 - 3.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 4.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 5.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9조(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6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국제표준화 및 국제공 동연구개발
 - 2. 분산에너지에 관한 국제 전시회의 국내 개최
 - 3.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 4. 해외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ㆍ협조
 - 5. 그 밖에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1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 산
 - 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 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 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 5.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 6.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확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2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인력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산에너지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63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
- 2. 분산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 3.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제공 및 경영ㆍ기술 등에 관한 자문
- 4. 분산에너지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사업
- 5.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에 대한 지원 · 관리
- 6.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시범사업 또는 제도개 선사업
- 7. 분산에너지 관련 정부의 보조ㆍ융자 등에 관한 지원ㆍ관리
- 8.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홍 보 및 국제협력 사업
- 10.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그 밖에 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4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①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상담·안 내·홍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 에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 다)를 둔다.
 - ②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분산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 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

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관에 대하여 승진, 전보, 포상, 후생복지 등에 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⑦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 제65조(보험가입) ①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 공급과 관련하여 분산에너지사용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 일부를 분산에너지 관련 피해 예방사업 및 분산에너 지 보급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금지행위)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의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열량을 속이는 등 부당하게 에너지 공급량을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 2.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중단·감축하거나 판매를 제한 하는 행위
 - 4. 그 밖에 공급하는 분산에너지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67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전감독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전감독원의 장,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분산에너지관련 기관·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 자등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 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68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1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 2. 제63조제4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 제69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 2.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
-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 제7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장 벌칙

-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 산에너지 통합발전사업을 한 자
 -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 산에너지사업을 한 자
 -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자
 -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체발전시설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한 자
 - 5. 제66조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 제14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26조에 따른 배전감독원의 장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3조를 위반하여 배전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3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1조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배전사업자
 -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배전사업자
 -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배전감독원의 설립준비) ① 한국배전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배전감독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설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 ④ 설립위원회는 한국배전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 부장과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설립위원회는 한국배전감독원의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한국배전감독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⑦ 한국배전감독원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 35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거래소가 부담한다.